

##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1차 모집 공고

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3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### 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: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우리기업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지원

나. 감독기관: 특허청

다. 주관기관: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### 2. 지원 대상 및 내용

가. 지원 자격

-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(특허/상표/디자인 등)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

나. 지원 내용

- (지원 방식) 전문 수행기관을 통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

구분	세부내용
모니터링	대상 국가·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 가능 여부 분석, 구매 감정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
차단신청	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
결과리포트	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

\* 세부내용은 협약서(위조상품 차단 수행계획서)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(지원 범위)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글로벌 SNS 등

\* 수행기관별 차단지원 국가 및 플랫폼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

#### 다. 지원 금액

- 총 사업비의 80~40% 지원(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)

구분	정부지원 비율	기업부담 비율	
		현금	현물*
소기업	총 사업비의 80%	10%	10%
중기업	총 사업비의 70%	20%	10%
중견기업	총 사업비의 50%	30%	20%
대기업	총 사업비의 40%	40%	20%

\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#### 라. 지원기간 : 10개월

\* 선정평가에서 지원필요성 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원기간 단축 가능

### 3. 선정 방법

#### 가. 선정기준

- 과업 목표 적정성, 지원 시급성, 과제 수행 능력,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진행

#### 나. 평가방법

- 1차 자격평가 및 2차 수행기관 발표 평가 실시

구분	평가기준	비고
1차 자격평가 (서류심사)	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개인, 중소기업, 중견, 대기업	2개 모두 충족必 탈락시 2차 평가 미실시
	② 대상 국가 내 유효한 지재권 1개 이상 보유	
2차 적합성 평가 (발표평가)	필요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적합성 평가 실시	[별표1, 2] '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' 참고

#### 다. 기업선정

- 2차 평가결과 70점 이상(100점 만점) 기업만 선정
-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인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별

## 4. 신청접수

가. 신청기간: '25. 1. 3.(금) ~ 1. 23.(목), 3주간

나. 신청방법

- 신청기업과 수행기관\*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

\* 수행기관 7개사 정보는 K-브랜드보호포털([www.ip-navi.or.kr/kbrands/](http://www.ip-navi.or.kr/kbrands/)) 참조

- K-브랜드 보호포털 >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>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

구분	제출서류명	필수	해당시	제출방법
동의서	지원사업 신청서	○		온라인입력
	홍보 참여 동의서(가점항목)		○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○		
기본신청	기업현황 및 신청현황	○		온라인입력
	제반서류 제출	○		파일 업로드
	1.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→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	○		
	2. 사업자등록증	○		
	3.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		○	
4. 구매감정보고서, 기타 서류(가점 증빙 등)		○		
지식재산 보유현황	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	○		온라인입력, 파일 업로드
위조상품 URL	위조상품 판매 게시글(URL)	○		엑셀 파일 업로드
정·가품 비교1	정·가품 비교대조표, 로고,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	○		온라인입력, 파일 업로드
정·가품 비교2	정품인증수단,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		○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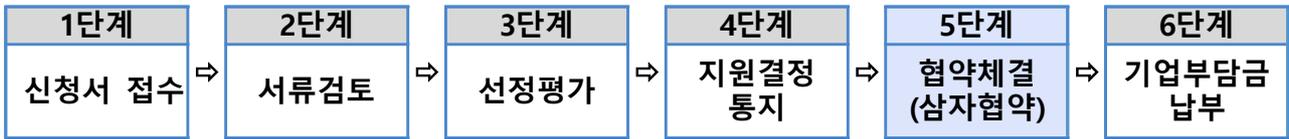
※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

※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

참고문서	[붙임1]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
	[붙임2]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

## 5. 추진일정

### 【 지원기업 선정 절차 】



### 【 지원사업 주요 절차 】

신청서 접수 (25. 1. 3.(금) ~ 1. 23.(목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홈페이지(www.ip-navi.or.kr/kbrands/)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</li> </ul>
↓	
서류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, 하자유무 검토</li> <li>▶ 서류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</li> </ul>
↓	
선정평가 (25. 2. 3.(월) ~ 2. 5.(수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행기관 + 신청기업 발표(수행계획,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)</li> <li>▶ 자격 평가(1차) → 적합성 평가(2차)</li> </ul>
↓	
지원결정 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</li> <li>* 선정결과는 '마이페이지-신청접수현황'에서 확인 가능</li> </ul>
↓	
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(25. 2. 10.(월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삼자협약(주관기관-지원기업-수행기관) 체결</li> <li>▶ 기업부담금 납부 : 협약체결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</li> </ul>
↓	
차단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·차단신청 실시</li> </ul>
↓	
월간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행기관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주관기관 검토</li> </ul>
↓	
중간보고 (협약 3개월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획 대비 추진 상황 및 중간 실적 점검, 향후 진행 방식 보고</li> </ul>
↓	
최종보고 (협약종료 10일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행기관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</li> </ul>
↓	
정부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</li> </ul>

※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보완요청 미이행 시 서류심사 중단 가능(사업 신청서 반려)

## 6. 유의사항(필독)

### 가. 기업 지원 불가 사유

- ① 휴·폐업 기업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단,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단,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④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- ⑤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### 나.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

- 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)
- ③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### 다. 선정취소 등 사유

- ① 신청기업이 허위 서류 제출,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협약체결 전 수행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것이 발견된 경우

- ② 신청기업이 협약 체결 전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③ 협약 체결 전 수행기관이 유통차단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⑤ 협약 체결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수행능력이 불충분한 경우
- ⑥ 협약 체결 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- ⑦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#### 라. 기타 유의사항

- (기업부담 현금 납부) 기업이 협약체결 후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주관기관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  - (과제비 정산)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투입인력 변경, 정·가품 구매 감정비,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과제비 불인정
  - (과제비 감액)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지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과제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음
    - \*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,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
  - (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)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  - 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 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주관기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

- 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 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특허청, 변리사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
- 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## 7. 문의처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-브랜드보호실 [www.ip-navi.or.kr/kbrands/](http://www.ip-navi.or.kr/kbrands/)
  - 주 소: 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
  - 전 화: 02-6196-2052, 2056
  - 이메일: [global@koipa.re.kr](mailto:global@koipa.re.kr)
    - \*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

[붙임1]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

[붙임2]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